

입법예고

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
(원예산업과)

1. 개정이유

매년 5월 25일을 법정기념일인 ‘차의 날’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「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차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할 수 있는 차의 날 행사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,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, 그 밖에 교육 및 홍보 행사로 정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약칭: 차산업법 시행령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차의 날 행사)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차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1.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
2.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
3.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행사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차의 날 행사)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차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</u> <u>1.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</u> <u>2.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</u> <u>3.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행사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240